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4198 저작권법위반방조
피 고 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신다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원(국선)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본범 B의 범행

B은 2023. 9.경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 등의 배너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불법 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해외 소재 서버 업체로부터 서버를 임차하여 C 사이트를 제작하고 일본 이하 불상지에 PC를 마련하여 원격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2023. 10. 3.경부터 2024. 11. 8.경까지 위 C 사이트에 국내 웹툰 'D', 'E' 등 저작권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국내 웹툰 802,991편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공중송신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방조 행위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국내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불법 사이트인 C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국내 웹툰 파일들을 무단 수집할 수 있도록 B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이 불상의 대출사이트에서 사람들에게서 상품권 등을 주고 수집한 인적사항들을 제공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위 인적사항 제공자들의 명의로 국내 웹툰 제공 플랫폼의 계정을 만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4. 3. 4. 0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앱을 통해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와 생년월일 'G' 및 휴대전화 인증번호 'H'을 제공하였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4. 1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위 B에게 F 앱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157명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네이버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과 C 운영자간 대화내역 현출, 각 첨부문서 포함)

1. 수사확인(별건 공범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웹툰사들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계정을 사용정지하고 있으므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운영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계정을 모집하여 주는 역할이 필수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정뿐 아니라 타인의 계정 정보까지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그 규모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4. 2. 26. 이전 I 저작권팀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78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면서 2024. 6. 19. 본건과 같은 계정 모집 범행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



록 247면), F 계정을 변경하여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정범의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빈 _____